

Deloitte.

세무관세뉴스

2023년 10월



주목할 만한 사항:

조세행정

- 초과 납부 세금 상계처리

법인소득세 ("CIT")

- 지원산업 제품을 생산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CIT 인센티브
- 합병 프로젝트 및 확장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CIT 인센티브
- 임가공 활동에 대한 CIT 인센티브
- 직원에 대한 PIT 계산 및 및 계산 서비스 수수료

개인소득세 ("PIT")

- 직원의 상금 소득에 대한 PIT 신고
- 건강검진, 엔터테인먼트, 미용 및 할인 프로그램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PIT 신고
- 부양가족 등록 안내
- 부양가족 공제 등록
- 비거주자 개인에 대한 PIT 정책

외국인계약자세 ("FCWT")

- 중개 및 고객 검색 서비스에 대한 FCWT
- 영화 콘텐츠 배급권 및 영화캐릭터 이미지 사용권 양도에 대한 FCWT
- 새로운 하도계약에 대한 FCWT 신고서 제출 및 추가 세무정보 등록

간접세 ("VAT")

- 부가가치세("VAT")가 부과되지 않은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및 사업에 사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매입 VAT
- 과학기술 활동에 대한 VAT
- 결제할인에 대한 계산서
- 청산된 기계 및 장비 수출에 대한 VAT 신고
- 조정 및 대체 전자계산서에 대한 VAT 신고
- 구매자가 상품을 반품하면 판매자는 조정 또는 대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무역 및 관세

- 말레이시아, 칠레, 브루나이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에 따른 특혜 관세율을 받을 수 있음
- 말레이시아, 칠레, 브루나이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CPTPP 관세율 적용에 관한 지침
- 원산지 신고표에 Bill of Materials에 대한 안내
- 내국수입신고에 대하여 납부한 수입세 환급 지침
- 내국수출거래에 대한 VAT 환급
- 정부의 2023년 6월 30일에 제 44/2023/ND-CP 호 시행령에 명시된 일부 상품에 대한 VAT 감면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Transfer Pricing
Firm of the Year

Tax Firm
of the Year



조세행정 지침 문서

초과 납부 세금 상계처리

세무당국은 기업의 초과 납부 세금, 연체이자, 벌금에 처리 신청서를 수령할 경우 규정에 따라 상계 처리할 책임이 있다.

(세무총국의 2023년 9월 29일 제4347/TCT-KK호 OL)

법인소득세 (“CIT”) 지침 문서

지원산업 제품을 생산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CIT 인센티브

회사의 프로젝트가 지역 인센티브 조건 및 지원산업별 인센티브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회사는 가장 유리한 세금 인센티브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지원산업 제품을 제조하는 투자 프로젝트가 이미 지역별 CIT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 회사는 프로젝트의 잔여 기간동안 지원산업에 따른 CIT 인센티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Thai Nguyen 세무국의 2023년 9월 6일에 제 4857/CTTNG-TTHT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법인소득세 ("CIT") 지침 문서

합병 프로젝트 및 확장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CIT 인센티브

1. 합병 프로젝트

합병 또는 통합 프로젝트가 있는 회사는 규정에 따라 합병전 프로젝트의 세금 인센티브 조건을 계속 충족하는 경우 잔여 기간 동안 병합 프로젝트의 CIT 인센티브를 상속받을 수 있다.

합병된 프로젝트가 각 다른 인센티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회사는 잔여 인센티브 적용기간 동안 각 조건에 대하여 CIT 인센티브를 적용 받을 수 있다.

2. 확장 투자 프로젝트:

회사는 기존 투자 프로젝트의 규모를 개발 및 확장하여 확장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규정조건을 충족하면 CIT 인센티브를 아래와 같이 적용할 수 있다.

- 잔여기간 동안 기존 프로젝트의 인센티브 적용 (해당되는 경우 세금 면제/감면, 우대세율적용 포함); 또는
- 확장 투자 프로젝트로 인한 추가 소득부분은 (우대세율 미적용) 같은 우대구역에 위치한 신규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세금 면제/감면 기간을 적용 받을 수 있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3년 9월 27일 제23075/CTBDU-TTHT호 OL)

임가공 활동에 대한 CIT 인센티브

임가공 분야에서 신규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회사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 회사가 기계, 장비, 인력 등에 투자하고 체결된 가공 계약을 수행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전체 원자재 (또는 주요 자재)를 받아 완제품을 생산하여 고객에 납품한다. (상법에 명시된 상업 가공 활동 제외), 및
- 산업단지에 위치한 신규 투자 프로젝트 (사회경제적 여건이 유리한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 제외)

다음과 같은 CIT 인센티브를 적용 가능하다

- 과세소득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2년간 CIT 면제; 및
- 그이후 4년간 CIT 50% 감면

(Binh Duong 세무국의 2023년 9월 18일자 제22005/CTBDU-TTHT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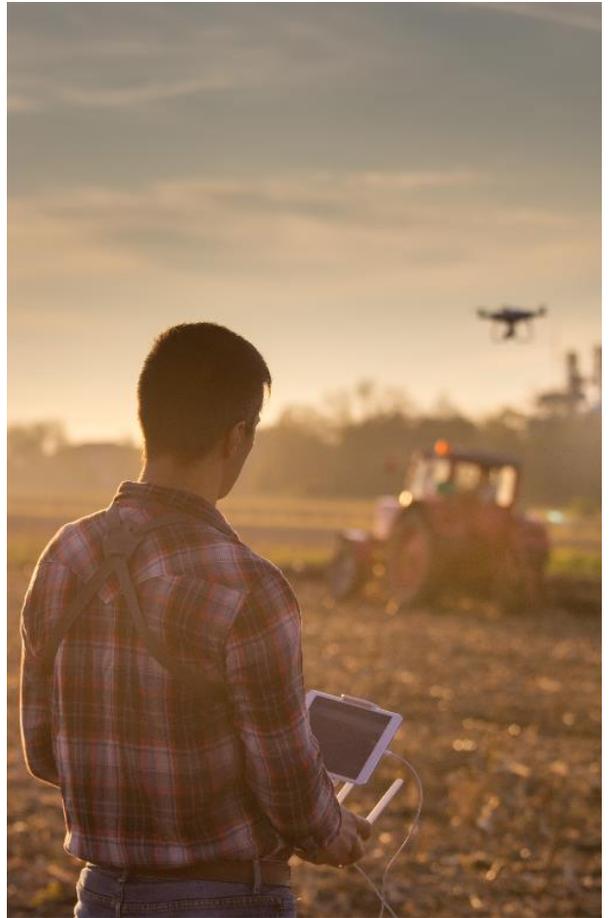
법인소득세 (“CIT”) 지침 문서

직원에 대한 PIT 계산 및 및 계산 서비스 수수료

개인에 대한 PIT 계산. 신고 서비스 수수료; 건강관리 회원카드 구입에 대한 비용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CIT 목적으로 공제 가능한 비용으로 간주된다.

- 이런 지출이 다음과 같은 서류중 하나에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노동 계약, 단체 노동 협약 또는 재정 정책
- 손금 불산입 항목에 해당되지 않다;
- 해당 비용은 근로자의 복리후생으로 확인되는 경우 규정에 따라 1개월 평균 급여를 초과해서는 안되며 지급 증빙서류에 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3년 7월 18일 제51950/CTHN-TTHT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간접세 (“VAT”) 지침 문서

부가가치세 (“VAT”)가 부과되지 않은 상품 및 서비스의 생산 및 사업에 사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매입 VAT

회사는 VAT가 부과되지 않은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투자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 VAT가 부과되지 않은 제품의 생산 및 사업에 사용되는 물품과 서비스의 매입 VAT는 공제 불가능하다.

(세무총국의 2023년 8월 31일 제3899/TCT-CS호 OL)

과학기술 활동에 대한 VAT

회사가 과학기술 서비스 (기계설비의 검사, 교정, 측정)를 제공하는 경우:

- 회사가 등록하였고 관할 기관에 의해 과학기술 활동 등록증을 발급 받았음, 및
- 이러한 서비스는 과학기술법에 따른 과학기술 서비스 계약을 기초하여 및 과학기술 활동 등록 증명서에 명시된 분야에 따라 수행됨.

이러한 과학 및 기술 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수익은 VAT 5%가 적용된다.

(하이퐁 세무국의 2023년 9월 13일 제4981/CTHPH-TTHT호 OL)

결제할인에 대한 계산서

회사와 해외고객 간의 매매계약서에 고객이 일찍 결제하면 2% 할인이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해당 할인이 결제할인으로 간주된다. 회사는 결제 할인에 대한 계산서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

(박닌성 세무국의 2023년 9월 29일 제4701/CTBNI-TTHT호 OL)

청산된 기계 및 장비 수출에 대한 VAT 신고

투자 프로젝트를 위해 기계 및 장비를 수입한 회사는 해당 기계장비를 해외로 청산하는 경우 수입 기계 및 장비의 사용 목적 변경을 신고하고 수입 단계의 세금을 (있는 경우)납부하도록 세관 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해외로 기계장비를 청산하는 회사가 관련 규정을 충족하는 경우 수출 기계 및 장비에 대한 VAT 0%를 적용 받을 수 있다.

(Binh Duong성 세무국의 2023년 9월 29일 제23300/CTBDU-TTHT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간접세 (“VAT”) 지침 문서

조정 및 대체 전자계산서에 대한 VAT 신고

회사가 전자계산서를 발행한 후 오류를 발견할 경우 제123/2020/ND-CP호 시행령 제19조 및 제78/2021/TT-BTC호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잘못된 계산서를 처리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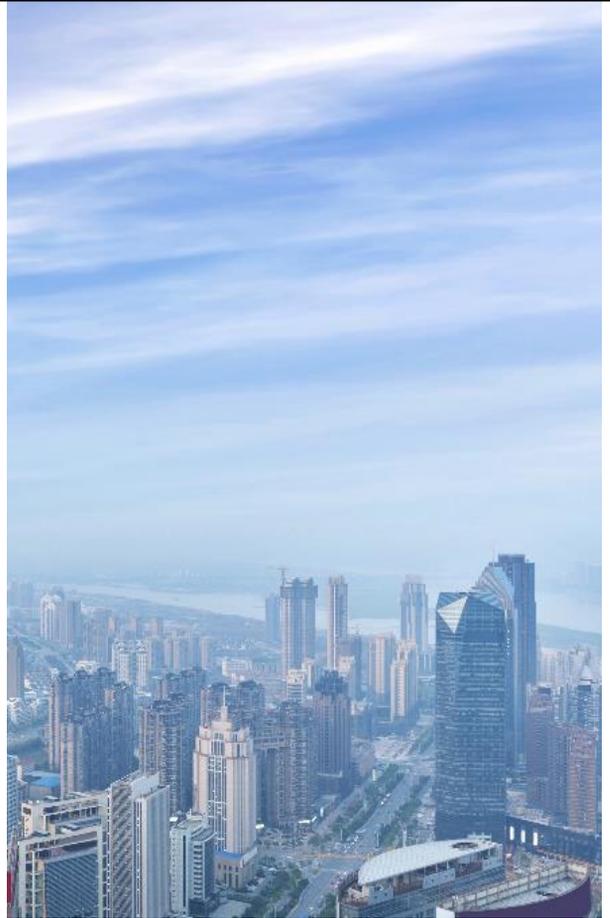
회사는 규정에 따라 오류가 발생한 기간에 조정 또는 대체 계산서에 대하여 VAT 수정 신고해야 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3년 9월 29일 제70311/CTHN-TTHT호 OL)

구매자가 상품을 반품하면 판매자는 조정 또는 대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일부 또는 전체 반품된 상품을 수령한 판매자는 2020년 10월 19일자 정부 시행령 제123/2020/ND-CP호 제4조 1항 및 제19조 2항 b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했던 계산서를 감소조정 또는 대체하기 위한 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세무총국의 2023년 10월 11일 제4511/TCT-CS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개인소득세 ("PIT") 지침 문서

직원의 상금 소득에 대한 PIT 신고

직원이 회사에 의해 주관된 대회에 참가하여 현금 또는 현물로 상금을 받으면 상금소득으로 간주된다.

상금의 가치가 VND 10 million 를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상금을 지급하기 전에 PIT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3년 8월 21일 제61175/CTHN-TTHT호 OL)

건강검진, 엔터테인먼트, 미용 및 할인 프로그램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PIT 신고

회사로부터 건강검진, 엔터테인먼트, 미용 프로그램으로 인해 받은 소득

건강검진, 엔터테인먼트 및 미용 활동을 위해 직원에 대한 지출이 지급내역에 개인 수령자의 이름이 명시된 경우 직원의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프로모션 프로그램으로 인해 받은 소득

회사가 상법에 따라 주최하는 프로모션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 고객에게 여행 선물 (현금이 아닌)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선물소득으로 간주된다.

(Ba Ria Vung Tau 세무국의 2023년 9월 25일 제6462/CTBRV-TTHT호 OL)

부양가족 등록 안내

근로자가 직접 부양하는 부모가 부양가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충분한 적격적인 증명서류가 있고 부양가족으로 등록되면 근로자의 PIT 과세 소득을 결정할 때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공제 신고가 가능하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3년 9월 27일 제69624/CTHN-TTHT호 OL)

부양가족 공제 등록

근로자의 자녀가 대학, 전문 중등학교, 직업 훈련에 재학 중이며 소득이 없거나 연간 평균 월 소득이 VND 1,000,00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법규정에 따라 부양가족 공제 등록이 가능하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3년 9월 27일 제69625/CTHN-TTHT호 OL)

비거주자 개인에 대한 PIT 정책

외국 본사로부터 02일 동안 베트남 지사를 방문하도록 배정받은 임원 직원은 체류 기간 동안 베트남 비거주자 납세자로 간주된다.

비거주자 개인의 베트남 PIT 과세소득은 지급 장소와 상관없이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다.

베트남 지사가 비거주자 개인에게 제공하는 주택 및 현금 또는 현물 이익은 베트남 글로벌소득으로 간주되어 베트남 PIT 부과된다. 베트남 지사는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기 전에 PIT 고정세율20%로 원천징수 책임이 있다.

(하노이 세무국의 2023년 10월 2일 제70784/CTHN-TTHT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외국인계약자세 (“FCWT”) 지침 문서

중개 및 고객 검색 서비스에 대한 FCWT

회사가 베트남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중개 및 고객 모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 계약자와 계약하면 해당 외국 계약자의 중개 서비스 수수료는 베트남 FCWT 가 과세된다.

매출에 대한 적용세율은 VAT가 5%이고 CIT가 5% 이다.

(Binh Duong 세무국의 2023년 9월 11일 제 21673/CTBDU-TTHT 호 OL)

영화 콘텐츠 배급권 및 영화캐릭터 이미지 사용권 양도에 대한 FCWT

베트남에서는 영화 콘텐츠 배급권 및 영화캐릭터 이미지 사용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VAT 5% 및 CIT 10%가 부과된다.

(세무총국의 2023년 9월 29일 제 4344/TCT-CS 호 OL)

새로운 하도계약에 대한 FCWT 신고서 제출 및 추가 세무정보 등록

세무 당국에 의해 tax code를 부여받은 회사는 이 tax code를 사용하여 외국인 계약자, 하도급 계약자를 대신하여 세금 의무를 신고하고 납부한다.

회사가 외국인 계약자 및 하도급 계약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105/2020/TT-BTC호 시행규칙에 첨부된 제04.1-DK-TCT-BTC호 양식으로 계약자의 세무정보를 등록할 책임이 있다.

(Da Nang 세무국의 2023년 9월 11일 제 9973/CTDAN-TTHT 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https://www.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신규 규정

말레이시아, 칠레, 브루나이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CPTPP”)에 따른 특혜 관세율을 받을 수 있음

2023년 9월 7일, 정부는 2022-2027기간에 CPTPP에 따른 베트남의 특별 우대 수출/수입 관세에 관한 2022년 12월 30일 제 115/2022/ND-CP 호 시행령을 수정, 보완하는 제 68/2023/ND-CP 호 시행령을 발표하였다. 보완된 주요내용이 다음과 같다:

CPTPP 협정에 따라 특별 우대 수출입 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국가는 말레이시아, 칠레, 브루나이를 포함한 3개국에 추가된다.

✓ 말레이시아는 2022년 11월 29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CPTPP 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음

✓ 칠레는 2023년 2월 2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CPTPP 관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음

✓ 브루나이는 2023년 7월 12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CPTPP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 2022년 11월 29일 (말레이시아의 경우), 2023년 2월 21일 (칠레의 경우) 및 2023년 7월 12일 (브루나이의 경우) 부터 시행령의 시행일 (2023년 9월 07일) 이전에 관세 신고서를 등록한 수출입 물품의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 CPTPP에 따른 관세율의 적용조건을 모두 충족함, 및

✓ 이미 더 높은 관세율로 세금을 납부했음

관세당국이 규정에 따라 초과 납부된 세액을 처리할 책임이 있다.

• 본 시행령은 2023년 9월 7일부터 시행된다.

(정부의 2023년 9월 7일 제 68/2023/ND-CP 호 시행령)

지침 문서

말레이시아, 칠레, 브루나이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CPTPP 관세율 적용에 관한 지침

2023년 9월 27일, 관세총국은 제 68/2023/ND-CP 호 시행령에 따라 말레이시아, 칠레, 브루나이 03개국에 대한 CPTPP 관세율을 신고 및 적용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제 5021/TCHQ-TXNK 호 OL를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 상기 03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물품이 제 115/2022/ND-CP 호 시행령 제 5조 제 7항 및 제 68/2023/ND-CP 호 시행령 제 1조 제 3항, 제 4호에 따른 CPTPP 특혜관세율 적용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입신고서상 관세코드 B21을 신고하도록 허용된다;

• 베트남에서 상기 03개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은 제 57/2020/ND-CP 호 시행령(2020년 7월 10일부터 2023년 7월 14일까지 효력이 있음), 제 101/2021/ND-CP 호 시행령 (2021년 12월 30일부터 2023년 7월 14일까지 효력이 있음), 제 26/2023/ND-CP 호 시행령 (2023년 7월 15일부터 효력이 있음)에 첨부된 부록에 따라 HS코드를 신고하고 수출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베트남에서 말레이시아, 칠레, 브루나의로 수출되거나 이국가에서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초과 납부 세금의 처리는 제 68/2023/ND-CP 호 제 2조 제 3항 제 4호의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관세총국의 2023년 9월 27일 제 5021/TCHQ-TXNK 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지침 문서

원산지 신고표에 Bill of Materials에 대한 안내

2023년 8월 25일, 산업통상부는 원산지 신고표에 손실률을 포함한 Bill of Materials ("BOMs")의 신고를 안내하는 제 708/XNK-XXHH 호 OL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 기업은 원산지 증명서 ("C/O")의 발급을 신청할 때 실제 BOM과 손실률을 아직 확정하지 못하는 경우, 기준 BOM을 사용할 수 있다:
 - ✓ 기준 BOM 및 추정 손실률을 사용할 수 있음;
 - ✓ 지원서류에 따라 신고된 데이터의 정확성을 약속해야 함;
 - ✓ 수출물품이 적용된 원산지 규정을 준수함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된 정보 및 데이터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어야 함.
- C/O 발급 후 관할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출품의 원산지를 검증하는 경우, 회사가 발급된 수출상품의 원산지 증명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실제 BOM/ 손실률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산업통상부의 2023년 8월 25일 제 708/XNK-XXHH 호 OL)

내국수입신고에 대하여 납부한 수입세 환급 지침

2023년 9월 15일, 관세총국은 내국 수입 신고에 대하여 납부한 수입관세 환급을 안내하는 제 4795/TCHQ-TXNK 호 OL를 발표하였다. 구체적으로:

- 내국 수출입 절차: 외국무역관리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베트남에 상업적 존재가 없는 외국상인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외국상인의 경우 제 08/2015/NĐ-CP 호 시행령 제35조 제1항 c점에 따른 내국 수출입에 해당되지 않다. 따라서 해당 기업이 내국 수입 신고를 등록할 수 없다.
- 보세창고에 보관된 물품의 통관절차:
 - ✓ 보세창고에 입고 및 보관이 허용되는 보세창고 임차인의 물품이 다음과 같다:
 - ❖ 수출통관절차를 완료한 베트남 물품;
 - ❖ 베트남으로의 수입 또는 제3국으로 수출을 위해 대기 중인 외국 물품
 - ✓ 보세창고에 물품을 입구 및 출고는 법규정에 따라 세관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 내국 수입신고서에 대하여 납부한 세금 환급: 아래 경우에는 제134호/2016/ND-CP호 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환급이 가능하다:
 - ✓ 수입세가 납부되고 완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내국 수입되는 물품 및
 - ✓ 완제품이 해외로 수출되거나 자유무역지로 수출되는 경우

(관세총국의 2023년 9월 15일 제 4795/TCHQ-TXNK 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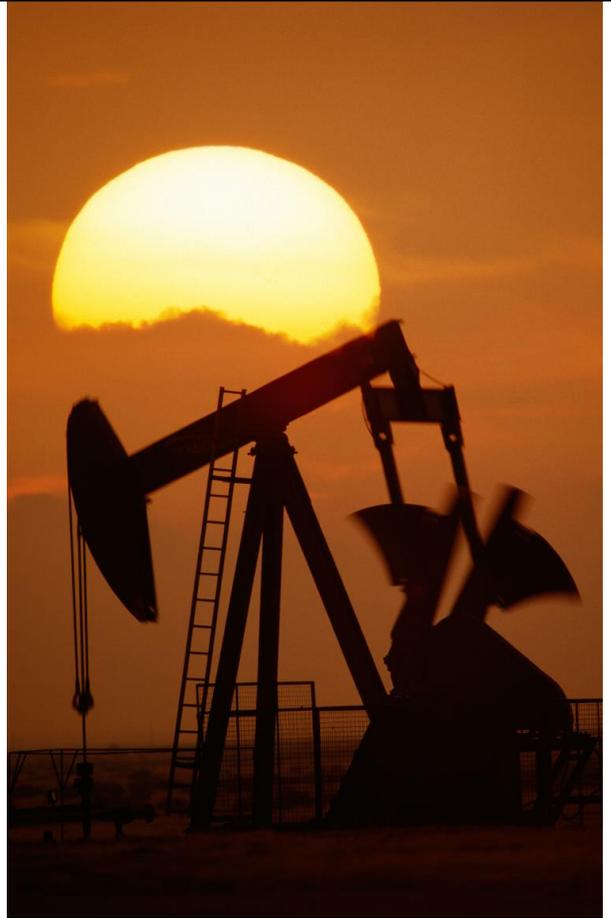
무역 및 관세 지침 문서

내국수출거래에 대한 VAT 환급

2023년 9월 26일, 관세총국은 VAT 정책에 대하여 Binh Duong 세무국에 회신하는 제 4271 호 /TCT-CS 호 OL 를 발행했다. 구체적으로:

- 2023년 7월 12일 관세총국의 제 3622호 /TCHQ-GSQL호 OL에 따라, 관세국은 기업의 내국 수출 신고가 제08/2015/ND-CP호 시행령, 제35.1조, 제 c점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을 발견하는 경우, 관세국은 해당 관세 신고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때문에 VAT 환급을 처리하지 않을 것이다.
- 관세총국은 Binh Duong 세무국이 다음과 같이 기초하여 기업들을 안내하도록 요청한다.
 - ✓ Binh Duong 관세국과의 협조;
 - ✓ VAT 규정 및 내국 수출에 관한 법규정 준수; 및
 - ✓ 기업의 실제 상황에 따름.

(관세총국의 2023년 9월 26일 제 4271/TCT-CS 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무역 및 관세 지침 문서

정부의 2023년 6월 30일에 제 44/2023/ND-CP 호 시행령에 명시된 일부 상품에 대한 VAT 감면

2023년 9월과 10월에 관세총국은 제44/2023/ND-CP호 ("제44호 시행령")에 명시된 일부 유형의 물품에 대한 VAT 감면을 안내하기 위해 여러 공문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 관세총국에 따르면 제44호 시행령에 첨부된 부록에 명시되는 물품은 VAT 감면 대상이 아니다. 구체적으로:
 - ✓ 부록 III의 B부 세션 III 에 명시되는 가정용 전자기기;
 - ✓ 부록 III의 B부 세션 IV 에 명시되는 전문 전자 장비;
 - ✓ 부록 III의 B부 세션 I ~ 세션 V에 명시되는 전자 및 하드웨어상품그룹의 부품 및 예비 부품
 - ✓ 부록 III의 B부 세션 VI 에 명시되는 하드웨어 및 전자상품그룹의 예비 부품;
 - ✓ 부록 I에 해당된 화학 제품
- 또한 2023년 6월 30일 제3431/TCHQ-TXNK호 OL의 지침에 따르면, 제44호 시행령에 명시된 HS 코드는 다음을 포함한 참조 목적으로만 사용된다:
 - ✓ 부록 I의 10번째 칼럼;
 - ✓ 부록 III의 A부의 10번째 칼럼;
 - ✓ 부록 III의 B부분의 4번째 칼럼.

수입 물품의 HS 코드의 결정은 세관 규정에 명시된 물품 분류에 관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관세총국의 9월 및 10월에 발표된 제 4991/TCHQ-TXNK 호, 제 5003/TCHQ-TXNK 호, 제 5004/TCHQ-TXNK 호, 제 5005/TCHQ-TXNK 호, 제 5042/TCHQ-TXNK 호, 제 5100/TCHQ-TXNK 호, 제 5101/TCHQ-TXNK 호, 제 5159/TCHQ-TXNK 호, 제 5160/TCHQ-TXNK 호, 제 5161/TCHQ-TXNK 호 OL)



Contact

Website: deloitte.com/vn

Email: deloittevietnam@deloitte.com

For reference only, not for distribution or sale

Contact Us



Thomas McClelland
National Tax Leader
+84 28 7101 4333
tmcclelland@deloitte.com



Bui Ngoc Tuan
Tax Partner
+84 24 7105 0021
tbui@deloitte.com



Bui Tuan Minh
Tax Partner
+84 28 7105 0022
mbui@deloitte.com



Phan Vu Hoang
Tax Partner
+84 28 7101 4345
hoangphan@deloitte.com



Dinh Mai Hanh
Tax Partner
+84 24 7105 0050
handinh@deloitte.com



Vo Hiep Van An
Tax Partner
+84 28 7101 4444
avo@deloitte.com



Vu Thu Nga
Tax Partner
+84 24 7 105 0023
ngavu@deloitte.com



Tat Hong Quan
Tax Partner
+84 28 7101 4341
quantat@deloitte.com



Vu Thu Ha
Tax Partner
+84 24 710 50024
hatvu@deloitte.com



Dang Mai Kim Ngan
Tax Partner
+84 28 710 14351
ngandang@deloitte.com



손원식 회계사
+84 93 445 6850
wonsikson@deloitte.com



이상근 회계사
+84 901 197 014
keunslee@deloitte.com



Bob Fletcher
Director, Trade and Customs
+84 28 7101 4398
fletcherbob@deloitte.com

Hanoi Office

15th Floor, Vinaconex Building,
34 Lang Ha Street, Dong Da District,
Hanoi, Vietnam
Tel: +84 24 7105 0000
Fax: +84 24 6288 5678

Ho Chi Minh City Office

18th Floor, Times Square Building,
57-69F Dong Khoi Street,
District 1,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 28 7101 4555
Fax: +84 28 3910 0750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Vietnam

In Vietnam, services are provided by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each of which may be referred to or known as Deloitte Vietna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